##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05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진종오·서천호·박정하

백종헌 • 정성국 • 김미애

서명옥 • 곽규택 • 이종배

박상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 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 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 관광·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임시공휴일) 정부는 제2조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0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3조의2(임시공휴일) 정부는 제2
	조제10호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0
	일 전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다
	만,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